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평택시고시 제2017-295호(2017.10.1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0번지 일원의 편입건물,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건물,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건조서를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열람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4월 16일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0번지 일원
- 다. 면적 : 126,749㎡
- 라. 시행자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임원택)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 가.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세부내역은 개별통보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조서내용 참조)

3.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 나. 보상액 산정방법
 - 1)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편입건물, 지장물 등 소유자가 각1인 추천,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편입건물, 지장물 등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 지장물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다. 보상금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4. 열람 장소 및 기간

- 가. 열람기간 : 2019.04.16. ~ 2019. 04. 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나.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서 제출장소(이의신청서 양식 : 개별통보 및 열람장소 비치)
 - 1)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5(5층))
 - 2) 평택시 도시개발과 민간개발1팀(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연락처(보상담당) 010-3427-0813 (조합) 031-658-2082 (FAX : 031-618-5944)

5. 기타사항

- 가. 토지 등 물건소유자가 주소변경 시에는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 나. 물건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거소불명, 미등기, 무허가등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을 때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됩니다.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내역(계재 생략)